

- (겸직 여부 결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결정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허가 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등) 등을 사전 안내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 위반 시 엄정 처분

-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
 -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양정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

〈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징계 양정 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 거.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너.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경직 정직-감봉 경직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경직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경직	